

Client Alert

2020년 1월

궁금하신 점은 아래를 참고하여
연락주시시오:

Adeline Wong

파트너 변호사
+603 2298 7880
adeline.wong@wongpartners.com

Ivy Tan

변호사
+603 2299 6505
ivy.tan@wongpartners.com

Kelvin Hong

변호사
+603 2299 6446
kelvin.hong@wongpartners.com

Choon Yit Chiang

변호사
+603 2298 7902
choonyit.chiang@wongpartners.com

기소예

부장, 한국기업지원
+603 2298 7903
soyeh.ki@wongpartners.com

말레이시아의 통상 및 관세를 규정하는 주요 제정법의 개정법 시행

통상 및 관세의 여러 측면들에 영향을 미칠 약 23 개의 입법 문서들 (개정법들로
구성됨)이 2020년 1월 1일로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변화들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제정법들의 개정**- 4 개의 주요 제정법들에 이루어진 개정을 모두 합하면
총 172 페이지에 달하는 상당한 분량이며, 개정된 주요 제정법들은
관세법 1967, 자유지역법 1990, 소비세법 1976, 판매세법 2018 입니다.
- **개정된 규정**- 관세규정 1977 은 철폐되어 새로운 관세규정 2019 로
대체되었고, 자유지역규정 1991 도 개정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들은 관세 및
통상 관련 절차의 다양한 측면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 세관 신고서
양식 등).
- **관세법**- [이전에 발간했던 자료](#)에 요약된 바와 같이, 관세법(개정)2019 은
현재까지 말레이시아 정부가 관세법에 도입한 가장 중요한 개정법입니다.
개정법은 관세청의 법 집행 권한, 과소 납세된 관세 징수, 비준수 납세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확대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에서
수입/수출을 진행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유지역법**- 여러 변화 중 주요 하일라이트는 자유지역 내에서의 물품의
수출입, 제조 활동과 관련된 서류와 기록은 7년 간 보관해야 하는 요건이
도입되었으며, 특정 위법 행위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입니다.
- **소비세법**- 여러 개정 내용 중 주요 하일라이트는 과소 납세된 관세에 대해
관세청의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의 3년에서 6년으로 연장된 점, 위법
행위에 대한 범칙금이 개정된 점, 기록 의무 보관 기간이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 점, 신규 위법 행위에 대한 카테고리가 다양하게 도입된 점, 특정 위법
행위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입니다.
- **판매세법**- 여러 개정 내용 중 주요 하일라이트는 수입품에 대한 판매세의
탈세를 새로운 카테고리로 도입했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구속을 시행한다는 점입니다.



- **상쇄할 수 있는 권한**- 개정된 관세법, 소비세법, 판매세법에 의하면, 관세청은 미납된 관세, 소비세, 판매세, 서비스세, GST 혹은 과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기타 미납 금액에 대해서 관세 환급 및 환불 금액과 상쇄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 **팡코르 섬(Pulau Pangkor)**- 말레이시아 정부가 2019 년 국가예산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팡코르 섬에 면세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다양한 개정법들이 시행되었습니다.

Wong & Partners 의 조세 및 국제통상 법무팀은 말레이시아 법을 근간으로 한 다양한 세무 및 통상 이슈들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기업을 지원합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본 자료는 [영어로 쓰여진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자료이며 가장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wongpartners.com

Wong & Partners
Level 21
The Gardens South Tower
Mid Valley City
Lingkar Syed Putra
59200 Kuala Lumpur